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5인으로 한다. 단 10일 이상 장기 입원자가 있을 경우 정원의 5%(소수점이하 반올림) 범위 내에서 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개정: 2019년 제 16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함)
2. 입소자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소자격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3. 입소대상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 시설에 입소해있던 기초생활수급자격의 등급외자
 - 2) 노인장기요양 1-2등급
 - 3) 노인장기요양 3-5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자

제12조(계약목적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은 서비스이용자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은 “갑”이 정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하여야하며 본 계약에 정한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 시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개정: 2018년 제14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함)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보험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식비, 간식비)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매월 초에 납부하여야한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

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시설 내에서 음주, 고성, 방가, 소요, 폭행, 도박, 절도, 흡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시설 내에서 업무와 무관한 집회 또는 시위 등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언비어의 날 조, 유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허가 없이 시설 내에서 기부 또는 모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허가 없이 시설의 명칭, 물품, 금품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며, 업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허가 없이 시설의 문서, 비품 등을 시설 외로 반출하거나 업무 외에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요양원의 청결, 도난, 화재의 방지를 위한 제반시설의 보호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제공시 어르신 본인의 실수나 폭력으로 인해 타 어르신 및 직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기물파손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경비 및 모든 문제는 본원에 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어르신

의 보호자(계약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1.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보험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급여 부분과 갑"이 책정한 비급여 부분(식비, 간식비)를 합산하여 결정하며, "병"은 매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보험료	80%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뺀 100%중 80%를 공단으로부터 지급.
자 부 담	본인부담금	20%	보험공단이 80%이고 개인 부담금이 20%임.
	식사재료비	1일/7,500원	<u>1식 2,500원으로 하루 3식</u>
	간 식	1일/1,000원	오후 1회 1,000원*1회